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6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0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의회 의원 활동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(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) 규정에 위반되어,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(안 제4조제2항)

-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'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의원 2인, 실무협의체 위원장' 중 '구의회 의원 2인'을 삭제하고자 함

나. "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"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전반)

## 3. 주요토의과제

"해당없음"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(구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2010.9.2 ~ 9.22(제출된 의견 없음)

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0.09.30)

(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(4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건의 하거나”를 “건의하거나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단체간의”를 “단체 간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과 제5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사람 중에서”로 하고, 제 2항 중 “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의원 2인,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를 “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“1인”를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하며”를 “하며,”로 “보궐

된"을 "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기타의"를 "그 밖의"로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1인"를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회의시"를 "회의 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과 제2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제1항 중 "지체 없이"를 "지체 없이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당해사무소"를 "해당 사무소"로 한다.

제13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중 "공청회등의"를 "공청회 등의"로 한다.

제15조 중 "관계인등에게는"을 "관계인 등에게는"으로 하고, "예산의 범위 내에서"를 "예산의 범위에서"로 한다.

제16조 중 "사무공간등"를 "사무공간 등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에 따라 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</u> 및 <u>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</u>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<b>제2조(설치)</b>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<u>건의</u> 하거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<u>사회복지협의체</u>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<b>제2조(설치)</b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건의하거나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<b>제3조(기능) ①~② (생략)</b></p> <p>③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<u>관련기관·단체간의</u>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3조(기능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단체 간의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제2항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 의원 2인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직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⑥~⑦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..... ..... ..... <u>사람</u> <u>중에서</u> ... ..... <u>구</u> <u>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실무</u> <u>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</u> <u>된다.</u></p> <p>③ ..... ..... <u>1명</u>..... 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..... ..... <u>사람</u> <u>중에서</u> ..... ..... .....</p> <p>⑥~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..... ..... ..... <u>해당</u> ..... ..... <u>해당</u> ..... ....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 인 위원 의 임기는 <u>당해</u> 직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<u>하며</u> 보궐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임기) ..... ..... ..... <u>해당</u> ..... ..... <u>하며, 위원의 결원으로</u> <u>새로 위촉된</u> .....</p>
<p>제8조(위원의 해촉) 대표협의체의 위 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<u>기타의</u>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<u>당해</u>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위원의 해촉) ..... ..... ..... <u>그 밖의</u> ..... ..... <u>해당</u> ..... .....</p>
<p>제9조(간사 및 직원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 을 받아 <u>회의시</u> 회의록을 기록·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 리한다. ③ 각 협의체는 <u>당해</u> 협의체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 원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9조(간사 및 직원) ① ..... ..... 1명... ..... ② ..... ..... <u>회의시</u> ..... ..... ③ ..... <u>해당</u> ..... .....</p>
<p>제10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의 위원 장은 <u>당해</u>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.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<u>당해</u> 협의 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③~④ (생략)</p>	<p>제10조(회의 등) ① ..... ..... <u>해당</u> ..... ..... ..... <u>지체 없이</u> ..... ..... ② ..... <u>해당</u> ... ..... 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회의록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<u>당해사무소에</u>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 ..... <u>해당 사무소</u>.....  .....</p>
<p>제13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의견의 청취) .....  .....  .....  ..... <u>그 밖에</u> .....  .....  .....</p>
<p>제14조(공청회등의 개최) (생략)</p>	<p>제14조(공청회 등의 개최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경비지원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등에게는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5조(경비지원) .....  .....<u>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  .....  .....  .....</p>
<p>제16조(협의체 운영지원)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<u>사무공간</u>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협의체 운영지원) .....  .....  ..... <u>사무공간</u> 등 .....  .....</p>